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1호, 98. 8. 21)

1. 검토경과

가. 1998. 8. 21 사천시장 제출

나. 1998. 8. 21 총무위원회 회부

다. 1998. 8. 25 제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제1차 회의 상정

2. 제안이유

지방 행정 조직을 저비용, 고효율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지구·인력을 최소화하여 정부의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한 작고 효율적인 지방제도의 구현과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행정동을 통·폐합함으로써 이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 결정

3. 주요골자

가. 행정동 통합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 결정

○ 현행 : 1읍 7면 117개 법정동 10개 행정동

○ 변경 : 1읍 7면 117개 법정동 6개 행정동

나. 개정내용

○ 동서동 + 대방동 → 동서동(서동 303-1번지)

○ 선구동 + 동좌동 → 선구동(선구동 116-1번지)

○ 봉이동 + 향촌동 → 향촌동(향촌동 837-2번지)

○ 남양1동 + 남양2동 → 남양동(송포동 353-4번지)

4. 검토의견

-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 행정 실천과제인 지방 행정 조직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지난 97년 12월 23일 내무부의 시·도조직관계관회의에서 시달된 추진지침의 세부실천계획으로 읍면동의 종합행정 기능을 점차 폐지하여 종합복지센터로 전환함에 따라 지역종합복지센터의 적정 규모화를 위하여 인구 5000미만 과소동의 통·폐합이 불가피한 현실임.
-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각종 민원서류 발급, 주민관리, 복지업무 등의 처리와 동명칭 및 소재지에 대한 주민의 정서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조정되었는지, 그리고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등의 문제점은 고려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